

1. 개정이유

청소년증 대리 신청자 범위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소년증의 발급, 재발급 및 진위 또는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을 ‘즉시’로 개정하는 등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및 ‘청소년증 발급대장’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증 대리 신청자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추가
(안 제2조 제3항 제4호)
-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청소년증 발급, 재발급 및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근거 마련(안 제3조 제3항)
- 다. 청소년증 발급신청 접수 담당자의 역할 및 청소년증 발급대장 기록 시점 명확화(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라.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접수 사무 처리기간을 ‘즉시’로 변경 및 개인정보 수집 목적, 항목, 제3자 제공 범위 등을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안 별지 제1호서식)
- 마. 청소년증 발급대장 기록사항 정비(안 별지 제3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과 신청인과의 관계 및 신청인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물어보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발급된 실물 청소년증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

템을 이용하여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할 수 있으며, 그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초·중·고 재학 중 [] 초·중·고 재학하지 않음 [] 고등학교 졸업		
신청내용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분실 [] 훼손 [] 기타)	
	수령방법	[] 방문 [] 등기우편	사진 3.5cm × 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교통카드 기능	[] 신청: 종류()	[] 신청하지 않음	
대리 신청인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필수)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수수료
1. 사진 1매(앞쪽의 사진란에 붙여 제출합니다) 2. 청소년증(청소년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신청인	→	접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
		제작 한국조폐공사	→
			청소년증 발급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210mm × 297mm [백상지 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표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청소년증 발급 관련 본인 확인 및 제작, 수령 등에 관한 업무 ○ 청소년증 제도개선,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자료 처리 등 ○ 기타 청소년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통계 자료 생산 등 업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사진, 초·중·고 재학 및 졸업 여부, 발급 신청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교통카드 기능 신청 여부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청소년증 발급 후 해당 청소년이 19세가 된 바로 전달까지 보유 및 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표시)
■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청소년증 발급 관련 본인 확인,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자료 처리 및 청소년증 적정 이용 관리 업무 수행 ■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청소년증 발급 후 해당 청소년이 19세가 된 바로 전달까지 보유 및 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동의함 (√ 표시)
■ 제공받는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조폐공사,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제공 범위 : 청소년증 발급 및 등기 발송 업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진, 초·중·고 재학 및 졸업 여부, 교통카드 기능 신청 여부		[]
신청안내		
1. 청소년증의 (재)발급 신청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14세 미만 청소년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대리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재)발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4.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청소년증이 발송되므로 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6.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작성된 주소로 발송한 청소년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최초 발송한 날부터 5일 이내에 3회 발송을 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청소년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청소년증을 찾아가야 합니다. 7.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1년 이내에 청소년증을 찾아가기 바라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청소년증은 파기됩니다. 8. "교통카드 기능"을 원하는 사람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교통카드의 종류를 적습니다. 9.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발급 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청소년증을 재발급 받은 이후 분실한 청소년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되찾은 청소년증을 발급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11.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 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14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청소년증 발급 신청이 급증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신청안내 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필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청소년증 발급대장

년 월 일

접수번호	접수구분 (신규/재발급)	청소년증 발급대상자					시·군·구 로부터 수령자 (서명/인)	수령안내 통지일	청소년증 교부			비고 (재발급사유, 주소지로 이송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인 (관계)	접수 담당자			교부일	수령자 (서명/인)	담당자 (서명/인)	

※ 청소년증을 등기우편으로 배송한 경우에는 “수령자(서명/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 대신 배송완료된 등기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64mm×25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또는 제4조에 따른 청 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 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 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 고 있는 사람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 제2조제1 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 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야 한다. <u><신 설></u>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 ①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 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는 대리인의 신분과 신청인과의 관계 및 신청인 정보가 맞는지 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에 필 요한 사항을 추가로 물어보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급된 실물 청소년증을 받

<신 설>

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할 수 있으며, 그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